

#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12. 9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본 계획안 제출 근거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 계획안을 제출할 때에는 행자부 지침 “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(2009.7.31)”과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제출되어야 하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제출되어 있어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수정내용

안 제명 “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”을 “영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 시설 증축계획안”으로 하고

1. 제안이유 중 “ 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”을 삭제하며

불임 “공유재산관리계획-2010년도관리계획총괄표”와 “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”을 삭제한다.

## 3. 수정안 : 별첨

##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명 “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”을 “영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 시설 증축계획안”으로 하고

1. 제안이유 중 “ 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”을 삭제하며

붙임 “공유재산관리계획-2010년도관리계획총괄표”와 “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”을 삭제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정안
<p><b>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</b></p> <p>의안 번호</p> <p>제출일자 : 2009. 11. 제출자 : 마포구청장</p> <p><b>1. 제안이유</b></p> <p><u>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,</u> <u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</u> <u>의거 염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에 대한 구의</u> <u>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</u></p>	<p><b>염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안</b></p> <p>의안 번호</p> <p>제출일자 : 2009. 11. 제출자 : 마포구청장</p> <p><b>1. 제안이유</b></p> <p><u>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</u> <u>의거 염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에 대한 구의</u> <u>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</u></p>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정안
<p>5. 법적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주차장법, 주차장법시행령, 주차장법시행규칙</li><li>○ 건축법, 건축법시행령, 건축법시행규칙</li><li>○ 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</u></li><li>○ 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</u></li></ul>	<p>5. 법적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주차장법, 주차장법시행령, 주차장법시행규칙</li><li>○ 건축법, 건축법시행령, 건축법시행규칙</li><li>○ <u>&lt; 삭제 &gt;</u></li><li>○ <u>&lt; 삭제 &gt;</u></li></ul>